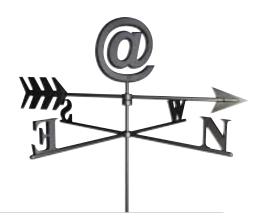


# 풍수재 보험 현황 및 향후 개발 방향

풍수해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위험 분산이 곤란해 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율적인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내 풍수재 관련 보험상품 및 외국의 풍 수재 보험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운영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 머리말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한 쯔나미와 매년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는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

풍 등 각종 자연재해는 현대 과학의 발달을 비웃는 듯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인류에 끼치며, 그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문명의 발달에 따른 무분별한 토지 이용, 오존층의 파괴, 엘니뇨와 같은 기상이변이 원인을 제 공해, 상습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지역도 할퀴고 가기 때문에 그 위력이나 진로 등을 예측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절대 안전구 역은 아니며, 2002년과 2003년 연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와 '배미'에서 경험했듯이 태풍과 집중호우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여름에 우리가 이겨 나 가야 할 하나의 고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원인별 재해발생을 보면 바람과 비를 동반한 호우, 태풍, 폭풍과 같은 피해가 대부분이다. 즉, 풍수해 피해가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수해는 홍수로 연결되어 주택, 건물 및 농경지 등이 침수되거나 홍수에 떠내려가는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풍수재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기 법 중 보험 제도를 통한 위험의 전가방식과 현재 국내 에서 판매되는 풍수재 관련 보험상품 및 외국 풍수재 보험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범국가적인 풍수재 보험상 품 개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보험에서 풍수재 RISK의 특성

풍수해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장마 또는 집 중호우로 인한 범 람 등을 동반한다.

이 모든 형태의 풍수해가 대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다음 특성들이 있다.

먼저, 풍수해 사고는 일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로 몇 일간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보험사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위험 분산이 어려워 단기간에 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풍수해는 상습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기본요소인 사고발생 불확실, 시간 및 장소의 우연성과 달리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이며, 이에 따른 도덕적

위험(Moral Risk)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풍수해 다발지역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높게 책정되고, 따라서 풍수해특약을 가입하는 계약 자는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자만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역선택을 초래하며, 풍수해 보험 인수시 보험사 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다시 보험료를 높이는 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자연재해 위험은 기상이변이라는 변수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위험도 평가 및 가입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고, 풍수해 위험을 담보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제한된 형태의 보험조건 및 특약을 통해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풍수재 관련 보험 상품 및 보상내용

국내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풍수 재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보험목적물 별로 구분, 상품특성

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재물손해 보상상품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험은 일반 적인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 험료를 내고 풍수재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동산종합보험이나 장기재물성보험에서도 동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건물(11층 이상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의료시설, 유흥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 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입시 자동으로 풍수재를 담보하게 되어있다.

이는 최근 계속된 풍수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

가 리스크 선별 및 적정보험료 산정을 못함으로써, 자율적인 손해율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 대형물건 위주로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은 전 위험담보(All RISK)로 보통약관에서 담보가 가능하다.

## 2. 건설공사 중인 건축 토목물이나 완성 된 토목구조물

건설공사보험은 전 위험담보(All Risk)보험으로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 가입 시에는 보통약관에 서 풍수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또한 완성된 도로나 구조물의 경우는 완성토목공 사물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교량, 항만, 제방 등 해안지역과 인접한 공사현장의 경우는 지난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일시에 큰 피해를 입은 대상으로, 해외재보 험시장에서 요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 3.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상해보험에서는 지진, 해일 분화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만 특별약관 가입 시에 한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풍수재 위험에 대해서 보통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여행보험에서 지진, 해일, 분화 등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불가능하였으나, 지난 동남아 쯔나미(지진을 인한 해일) 사고 발생 이후 2005년 4월부터는 특별약관 가입시에는 해외여행보험에서도 지진, 해일 분화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 4. 자동차 침수시 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거 도



로 주행 중(엄밀히 자동차엔진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1999년 5월 1일 이후 사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하여 차량이 휩쓸려 차량이 파 손된 사고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

상기와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 상품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시 재해가 발생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률이 명백히 높으므로 선의의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외국의 자연재해 (풍수재) 보험 운영사례

풍수재 보험 은 각 국가의 기 후나 지형, 법규 또한 보험제도의 특성에 따라 위험

의 정의나 담보위험 등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 만, 대재해 위험에 일찍부터 보험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연재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하는 국가로는 우선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있다.

### 1.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

프랑스의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자연재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특약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어있다. 프 랑스는 기타 손해보험(가정종합보험, 자동차보험)에

같다.

서도 자연재해특약이 의무화되어있다.

의무보험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위험을 지역적, 시간적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위 험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습피해 지역만 가입하는 역 선택의 위험을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여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만들기 위함 이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화 하기 위해 법 제정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상습 피해지역은 피해지역을 돕겠다는 연대책임 의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에 자연재해 보험특약을 연결시킴으로써 화재 보험료 규모에 따른 위험의 차등 화, 즉 보험료의 차등화를 이루고 대부분의 위험을 포 함(일부 지진제외)한 전 위험 담보형식을 일반화시킨 보험문화의 발달로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다. 또한 담 보 목적물을 제한시킴으로써 상대적 보험료가 저렴하 게 유지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이 없 어 개인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 2. 미국의 자연재해보험

미국의 자연재해보험은 세계 유일하게 독립된 보험 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풍수해보험인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는 1969년 국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시작되어 연방보험국이나 보험회사에서 자연재해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연방비상관리청(FEMA)은 재보험 기능을 담당한다.

NFI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풍수해 위험 지역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되어야 하며, 상습 풍수해 지역선정에 앞서, 건축물을 세워 보상을 받으려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보험요율은 Flood Insurance Rate Map을 작성해 여러 풍수재유형 및 리스크를 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산출한다.

향후 국내 풍수재보험 운영 방안

국내 풍수재로 인한 피해위험은 매년 증가하며 향후 자연재 해보험은 정부, 보험 회사 개인이 서로 유

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범국가적인 풍수재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 현재 국내에 독립된 자연재해 보험 상품이 없고 특약 으로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가입률 및 피해 보상 수준이 저조하여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습 침수 지역이거나 홍수피해가 잦은 지역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험이 충분한 위험전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의 무상지원은 주민의 피해예방 및 손해경감 활동의 저하를 초래하여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는바, 각각 손실발생 가능성, 피해규모에 따라 보험료책정시 개별주민의 안전의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방재시스템과 보험회사의 과학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홍수지도(flood map)의 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요율 산출, 피해보상 규모 파악 등으로 홍수 위험을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천재지변을 원천적으로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상존하는 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선진각국이 채택한 사례에서 보듯이 위험과 보험의 특성, 사회보장적인 특성이 최대한 감안된 최선의 위험 관리시스템인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보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인이나 국가 모두가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